

[별표]전자민원 대상 업무

①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대상 업무			신청 가능 체류자격
구 분	대분류(근거법령)	소분류	
모든 자격 신청 가능	체류기간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제25조)	단기체류자격 체류기간연장허가	모든 체류자격
		등록(거소)외국인 체류기간연장 허가	모든 체류자격 ※ 단, 아래 체류자격은 제외 〈제외 대상〉 기술연수(D-3), 기업투자(D-8), 특정활동(E-7), 거주(F-2), 결혼이민(F-6), 기타(G-1) 방문동거(F-1) 일부
		등록(거소)외국인 및 단기체류자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모든 체류자격
	재입국허가 (「출입국관리법」제30조)	재입국허가	모든 체류자격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제35조제2호)	여권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의 변경	모든 체류자격
	체류지·거소지 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제36조, 「재외동포법」제11조)	체류지·거소지 변경(이전) 신고	모든 체류자격
일부 자격 신청 가능	체류자격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4조)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허가 - 허가에 따르는 외국인등록증 발급 또는 거소신고·거소증발급 포함	일반연수(D-4)→유학(D-2) 방 문 취 업 (H - 2) → 재 외 동 포 (F-4-24,25,27,2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 숙련기능인력(E-7-4)
	근무처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제21조)	근무처변경허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출입국관리법」제20조)	시간제취업허가	유학(D-2), 일반연수(D-4)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 (「출입국관리법」제19조)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퇴직·이탈 등)	기술연수(D-3), 교수(E-1)~선원취업 (E-10), 방문취업(H-2)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제35조제3호)	취업개시 및 근무처변경신고	방문취업(H-2)

② 유학생정보시스템

전자민원 대상 업무		신청 가능 체류자격
대분류(근거법령)	소분류	
외국인유학생 변동신고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	외국인유학생 변동신고	유학(D-2), 일반연수(D-4)